

## 『기 협약 물가정산 반영 협약변경(안)』 [예시]

구분	기 존	수정사항	비고
표준 실시 협약 안	<p>제3조(용어의 정의)</p> <p><b>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</b> : 시설사업기본계획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하고 여기에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운영비의 계산기준이 되는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 환산하여 산출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분을 말하며, 본 협약에서 명시한 불변가격을 경상가격으로 환산할 경우에 적용한다.</p>	<p>제3조(용어의 정의)</p> <p><b>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</b>: 한국은행 홈페이지 경제통계시스템에서 공표되는 지표로서 당해 시점이 포함된 분기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항목 중 건설투자 GDP Deflator를 말한다.</p> <p><b>물가변동비</b>: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가격산출기준시점(○○○○년○○월○○일)부터 본 사업시설준공예정일까지의 물가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비의 변경분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를 말한다.</p> <p><b>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</b>: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가격산출기준 시점(○○○○년○○월○○일)의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하고 여기에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운영비의 계산기준이 되는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 환산하여 산출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분을 말하며, 본 협약에서 명시한 불변가격을 경상가격으로 환산할 경우에 적용한다.</p>	용어의 정의 추가 또는 수정

구분	기 존	수정사항	비고
표준 실시 협약 안	<p>총민간투자비: 총투자비 중에서 주무관청의 재정지원에 의해 조달되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.</p>	<p>제3조(용어의 정의)</p> <p>예비비: 건설기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.</p> <p>총민간사업비: <u>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의 총사업비 중에서 건설기간 동안 주무관청의 재정지원에 의해 조달되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.</u></p> <p>총민간투자비: <u>총민간사업비와 건설이자 및 물가변동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. 각 분기별 투입예정시점까지의 물가변동비는 직전분기말까지의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.</u></p>	용어의 정의 추가 또는 수정

구분	기 준	수정사항	비고
표준 실시 협약 안	<p>제12조(총민간투자비/총민간사업비)</p> <p>① 본 사업의 총민간투자비는 금000원으로 하며,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표00(총민간투자비)과 같다.</p> <p>② 본 사업의 타인자본 조달에 소요되는 건설이자의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금리는 0.00%(기준금리0.00% + 가산금리0.00%)이다.</p>	<p>제12조(총민간투자비/총민간사업비)</p> <p>① 본 사업의 총민간투자비는 금000원으로 하며,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표00(총민간투자비)과 같다.</p> <p>② 제1항의 총민간투자비는 준공시점에 다음 각호에 따라 정산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최초 실시협약상의 총민간투자비에 가산(차감)한 금액으로 조정한다.</p> <p>1. 정산주기: 매 분기</p> <p>2. 정산대상: 공사비의 물가변동분 및 이로 인한 건설이자 변동분 단, 건설이자 변동분은 실제 추가 자금차입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함.</p> <p>3. 정산수준: 최초 실시협약 재무모델에서 기반영된 물가변동분을 상회(하회)하는 실제 물가변동분의 50%.</p> <p>③ 제2항에 따라 총민간투자비를 조정할 경우, 사업시행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(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) 및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하여 시공자(수급인) 및 하수급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④ 본 사업의 타인자본 조달에 소요되는 건설이자의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금리는 0.00%(기준금리0.00% + 가산금리0.00%)이다.</p>	<p>※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반영 여부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합의에 의함.</p> <p>■최초 실시협약 재무모델에 기반영된 물가변동률이 3%/년 이상인 경우: - 위 실시협약 변경안 수정사항 제12조 제2항의 적용</p> <p>■최초 실시협약 재무모델에 기반영된 물가변동률이 3%/년 미만이거나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경우: - 위 실시협약 변경안 수정사항 제12조 제2항을 적용하되, - 제3호 정산수준은 “3%/년 물가변동률을 적용한 물가변동분을 상회하는 실제 물가변동분의 50%”적용</p> <p>■실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연 증가율이 3%/년보다 하회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합의에 의해 반영함.</p>

구분	기 존	수정사항	비고
표준 실시 협약 안	제19조(도급·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)	제19조(도급·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) ⑤ <u>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산정된 물가변동 정산분이 시공자(하수급인 포함)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필요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	- 필요조치 조항 추가
	제59조(임대료의 산정)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 후 최초 5년 동안(이하“최초 임대료 적용기간”이라 한다.) 매 분기별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는 <u>총민간투자비(제12조 내지 제13조)에 제57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되는 사업수익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.</u>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 등록 후 임대가 개시되는 날에 최초 임대료 적용기간에 지급될 임대료를 산정하여 그 산정근거와 함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는다.  ③ 본 협약에 따른 <u>총민간투자비 변경사유로 임대료 조정을 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임대료 산정방법에 의하여 임대료를 재산정하기로 한다.</u>	제59조(임대료의 산정)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 후 최초 5년동안(이하“최초 임대료 적용기간”이라 한다.) 매 분기별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는 <u>본 협약에 따라 산정되는 총민간투자비(제12조 내지 제13조)에 제57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되는 사업수익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.</u>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 등록 후 임대가 개시되는 날에 최초 임대료 적용기간에 지급될 임대료를 산정하여 그 산정근거와 함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는다.  ③ <u>본 조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할 경우 제12조(총민간사업비/총민간투자비)에 따라 재산정된 총민간투자비 조정금액에 제57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되는 사업수익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.</u>  ④ <u>본 협약에 따른 총민간사업비 변경사유로 임대료를 재산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본 협약에 따른 임대료 산정방법에 의하여 임대료를 재산정하기로 한다</u>	총민간투자비 재산정 결과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한다는 조항을 추가